

우리 회사
인근에

식품공장 이 있습니다.

식품공장 인근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례

- ▶ 형광등을 제조하는 A사업장에서 **생식독성** 물질인 **수은**(Mercury)이 토양으로 다량 누출
- ▶ 배터리를 제조하는 B사업장에서 **발암성** 물질인 **트리클로로에틸렌**(Trichloroethylene)이 대기중으로 다량 방출

**인근 식품공장이 유출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 ▶ 국민 먹거리 안전 위협****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이것만은 지킵시다!**제
조
·
사
용

- **화학물질 안전한 취급 및 저장**(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)

-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를 작업장에 게시·비치하고 MSDS의 7번 항목(취급 및 저장방법)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취급 및 저장

- **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장치 설치**(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)

- 허가대상 유해물질, 관리대상 유해물질, 분진 발생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(후드, 덕트, 공기정화장치, 송풍기, 배기구) 등의 환기장치 설치

- **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제출**(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)

- 허가대상 유해물질, 관리대상 유해물질, 분진 발생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, 전체환기장치, 밀폐설비 등을 설치, 이전, 구조변경시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

배
출
·
폐
기

- **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**(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)

-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가 되도록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

* 대기오염물질 :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

- **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준수**(폐기물관리법 제17조)

-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기준과 방법 및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과 준수사항에 적합하게 처리

내가 무심코 버린 화학물질!! 우리의 밥상으로 돌아옵니다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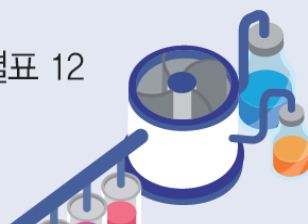
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및 절차

제출대상

허가대상 유해물질,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및 분진작업 시 발생하는 가스, 증기,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, 제거하기 위한 국소배기장치(이동식 제외), 전체환기장치, 밀폐설비

-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 : 배풍량이 60m³/min 이상
-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 이외 : 배풍량이 150m³/min 이상

- 허가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: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
-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: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
- 분진작업의 종류 :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6
-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 :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



제출 및 안내 문의처

제출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

제출서류 신청양식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5호 서식,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2부(1부는 **가급적 전자문서로 제출**)

제출시기 (작업 시작 15일 전까지) 국소배기장치, 전체환기장치, 밀폐설비 설치·이전·변경의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으로부터 15일전

안내문의 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(공단 홈페이지에서 연락처 확인 가능)

심사·확인 절차

